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1
------	-----

제출년월일 : 2005.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2005년도 조직 및 인력운영 정비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 일부 “과” 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과” 명칭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과” 명칭 변경(안 제3조, 제9조)
- 환경복지과 ⇒ 환경보호과 • 임업경영과 ⇒ 산림과
 - 농업경영과 ⇒ 농정과 • 축산경영과 ⇒ 축산과
- 나.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신설함.
(안 제3조)
- 다. 위생환경사업소를 위생시설관리담당으로 환경보호과에 흡수
(안 제3조)
- 라.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하고 “동계올림픽추진과 스포츠
사업 관련사무 “를 통합,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안 제3조의1)
- 마.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경제
팀, 사회복지팀, 상하수도팀의 한시기구를 둠.(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붙임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 예고 : 평창군공고2005-46호(2005.1.29)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을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환경복지과”를 “환경보호과”로, “임업경영과”를 “산림과”로 하고, 동항 중 “지역도시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삽입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중 “민방위 관련 업무”를 “혁신분권 관련 업무”로, 동항제5호 다목중 “체육진흥 및 청소년 관련업무”을 “도서관 관련업무”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광마케팅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6호중 “환경복지과”를 “환경보호과”로 하고, 동항 제6호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마목을 다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제2항제7호중 “임업경영과”를 “산림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백두대간보호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8호중 마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9호중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 내지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사. 경관관리 관련 업무

아.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특정프로젝트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난안전관리과

가. 지역단위 재난·재해관련 업무

나. 방재(복구지원)관련 업무

다. 민방위 관련 업무

라. 안전지도 관련 업무

제3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여유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스포츠사업단을 둔다

1.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업무

2. 국·내외 각종 스포츠 행사에 관한 업무

3. 동계올림픽 추진 업무

제9조제1호중 “농업경영과”를 “농정과”로, 동조제2호중 “축산경영과”를 “축산과”로 한다.

제4장(제11조 내지 제13조)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①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기구를 둔다

1. 산업경제팀
2. 사회복지팀
3. 상하수도팀

②한시기구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경제팀
 - 가. 경제정책 업무
 - 나. 향토자원 업무
 - 다. 기업지원 업무
2. 사회복지팀
 - 가. 사회보호 업무
 - 나. 생활지원 업무
 - 다. 여성 및 청소년정책 업무
3. 상하수도팀
 - 가. 상수도관련 업무
 - 나. 하수도관련 업무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환경복지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3항중 “환경복지”를 “환경보호”로 하고, “임업경영”을 “산림”으로 한다.

④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환경복지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4항제1호중 “환경복지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중 “환경복지과장”을 “사회복지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을 “사회복지팀”으로 한다.

⑥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환경복지과장”을 “사회복지팀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⑧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동항중 “지역도시과장”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삽입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민원봉사과·자치행정과·재무과·문화관광과· <u>환경복지과</u> ·임업경영과·건설과· <u>지역도시과</u> 를 둔다.	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 <u>환경보호과</u> ·산림과·건설과·지역도시과·재난안전관리과-----.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3. 자치행정과	3.(현행과 같음)
가.~라.(생 략)	가.~라.(현행과 같음)
마. 민방위 관련 업무	마. 혁신분권 관련 업무
바.~사.(생 략)	바.~사.(현행과 같음)
4.(생 략)	4.(현행과 같음)
5. 문화관광과	5.(현행과 같음)
가.~나.(생 략)	가.~나.(현행과 같음)
다. 체육진흥 및 청소년 관련 업무	다. 도서관 관련 업무
라. <신 설>	라. 관광마케팅 관련 업무
6. 환경복지과	6. 환경보호과
가.~나.(생 략)	가.~나.(현행과 같음)
다. 사회복지 및 주민의료보호에 관한사항	다. 야생조수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라. 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사항	라.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생 략)	마. (생 략)
<u>7. 임업경영과</u>	<u>7. 산림과</u>
가.~다.(생 략)	가.~다.(현행과 같음)
<u>라. <신 설></u>	<u>라. 백두대간보호 관련 업무</u>
8.(생 략)	8.(생 략)
가.~라.(생 략)	가.~라.(생 략)
<u>마. 지역단위 재난·재해관련 업무</u>	<u>마.<삭 제></u>
바.(생 략)	바.(현행과 같음)
9.(생 략)	9.(현행과 같음)
가.~라(생 략)	가.~라.(현행과 같음)
<u>마. 상하수도 관련 업무</u>	<u>마. 삭제</u>
<u>바.~아. <신 설></u>	<u>바.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u>
<u>10. <신 설></u>	<u>사. 경관관리 관련 업무</u>
	<u>아.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 관련 업무</u>
	<u>10. 재난안전관리과</u>
	<u>가. 지역단위 재난·재해관련 업무</u>
	<u>나. 방재(복구지원)관련 업무</u>
	<u>다. 민방위 관련 업무</u>
	<u>라. 안전지도 관련 업무</u>
<u>제3조의1 <신 설></u>	<u>제3조의1(여유기구)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스 포츠사업단을 둔다.</u>
	<u>1.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업무</u>
	<u>2. 국·내외 각종 스포츠행사에 관한 업무</u>
	<u>3. 동계올림픽 추진 업무</u>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경영과

가. ~마.(생 략)

2. 축산경영과

가. ~라.(생 략)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군에 위생환경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사업소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125-3번지에 둔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이 간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 연구발전
3.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소관사무) -----
-----.

1. 농정과

가. ~마.(현행과 같음)

2. 축산과

가. ~라.(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 <삭 제>

제12조 <삭 제>

제13조 <삭 제>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 1개 실·국, 2개 과·담당관(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개 실·국, 3개 과·담당관)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